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기획재정부 등 20개 기관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개별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조합·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4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및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2조(「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전등기)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광주과기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3조(「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

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
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
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
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
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의 개정)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
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기금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4조(이전등기) 기금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등기) 금융감독원은 지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 지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금융감독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감독원은 원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기금은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기금은 제14조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12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

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3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14조(「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광업소·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15조(「무역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이전등기) 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16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

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28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2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변호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19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 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20조(「산림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21조(「상법 시행령」의 개정)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22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고는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은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진흥원은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4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협은행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의3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협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

의 소재지에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 수협은행은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⑥ 수협은행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항의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5조(「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기금은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기금은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사무소 또는 지부(이하 “지사사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사무소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등)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은 법 제55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7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부·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 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7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8조(변경등기) 공단은 법 제49조제2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4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8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전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9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지사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2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

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31조(「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전등기) 울산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울산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32조(「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의 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33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1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34조(「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

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조합은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및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35조(「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의 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36조(「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37조(「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중소기업은행장은 법률 제641호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중소기업은행은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38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회는 중앙회 회장이 법 제106조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중앙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설치등기를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제51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2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63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41조(「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분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제4조(이전등기)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지방의료원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42조(「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점의 설치등기) 재단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이전등기) 재단은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변경등기) 재단은 제8조 각 호 또는 제9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단은 재단의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지부의 설치등기)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등기를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제74조(이전등기) 협회는 주된 사무소나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5조(변경등기) 협회는 제72조 각 호 또는 제7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44조(「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

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45조(「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

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46조(「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

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47조(「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48조(「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및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공단의 사장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의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49조(「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0조(「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1조(「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2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53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

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54조(「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종전 소재지 또는 새로운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변경등기) 공사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55조(「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종전 소재지 또는 새로운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6조(「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마사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영 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사회는 마사회 회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제57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8조(「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이전등기) 부동산원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종전 소재지 또는 새로운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변경등기) 부동산원은 제5조 각 호 또는 제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
기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관할 등기소) 부동산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59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
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
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
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0조(「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점의 설치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한국산업은행은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회장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61조(「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2조(「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63조(「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64조(「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수출입은행은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65조(「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전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6조(「한국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등기) 한국은행은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한국은행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한국은행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가 「한국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7조(「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2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의 이사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9조(「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70조(「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 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71조(「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납입된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를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2조(「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73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74조(「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사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5조(「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해양과기원은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登記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登記해야 한다.

제76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사업소·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登記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登記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登記해

야 한다.

제77조(「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8조(「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3(지사 등의 설치등기) 지원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29조의4(이전등기) 지원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29조의5(변경등기) 지원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 또는 제29조의3의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제29조의4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공사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등기) ① (생략) <u>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3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1. <u>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u> 2. <u>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u> 3. <u>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u> <u>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1. <u>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u>	제54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u>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③ 공제조합은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u>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

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및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에는 3주 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이전등기) ① 광주과기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광주과기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4조(이전등기)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5조(변경등기) 광주과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u>	<u>제5조(변경등기) 광주과기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①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u> <u>2.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 제3조 각 호의 사항</u> <u>3. 이미 설치된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과 소재지</u> <u>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그 하부조직의 명칭과</u>	<u>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소재지만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2. 새로운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

3.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② 공단은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2. 이전한 하부조직의 종전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제4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3. 이전한 하부조직의 새로운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

4.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이전한 사실

③ 공단은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주된사무소의 또는 하부조직의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3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된 후 2주일 이내

2.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 변경된 후 3주일 이내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

그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이전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u>	<u>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이전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u>	<u>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이전등기) 연구소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등기만을 한다.	제3조(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①</u> <u>기금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관할 등기소:</u> <u>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시에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도 등기하여야 한다.</u> <u>2. 새로 설치한 분사무소의 관할 등기소:</u> <u>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u> <u>3.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른 분사무소의 관할 등기소:</u> <u>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u>	<u>제3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기</u> <u>금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같은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4조(이전등기) ①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소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34조(이전등기) 기금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의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4조에

<u>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	<u>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신설등기) 금융감독원이 지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u> <u>2. 당해 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u>	<u>제4조(설치등기) 금융감독원은 지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5조(이전등기) ①금융감독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②금융감독원이 지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u>	<u>제5조(이전등기)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 지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관할등기소) ①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생략)

제9조(대리인의 선임) ①원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6조(변경등기)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관할등기소) ① 금융감독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대리인의 선임) ①금융감독원은 원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①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1. 본점의 소재지: 2주일 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u> <u>2.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u> <u>②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u>	<u>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16조(이전등기) ① 기금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u> <u>②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u>	<u>제16조(이전등기) 기금은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u>

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4주일 내에 제14조제1호부터 제
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
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
는 2주일 내에 그 이전 사실만
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제14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
8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에서도 3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
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
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
일 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지
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

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
기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기금은 제14조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
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
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u>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u>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u> <u>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u> <u>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u> <u>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u> <u>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u> <u>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u> <u>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u> <u>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u> <u>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u> <u>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u> <u>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u>	1. ~ 3. (현행과 같음) <u>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u> <u>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u> <u>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u> <u>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u> <u>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u> <u>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u> <u>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이전등기) ①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u>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u> <u>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u>	<u>제5조(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6조(변경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u>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u>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 ----- ----- ----- ----- ----- ----- ---- <u>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이전등기)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u> <u>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u> <u>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u> <u>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u>	<u>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u> <u>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u> <u>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u> <u>3. 이미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u> <u>②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u> <u>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u>	<u>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u>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u>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u>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u>	<u>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u>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u>
--	---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①</u> <u>공사가 광업소·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u> <u>2.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u> <u>3. 이미 설치한 사업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u> <u>②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u> <u>제4조(이전등기) ①</u> <u>공사가 주된</u>	<u>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공</u> <u>사는 광업소·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u>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다른 등
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
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
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
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는 2주일 이내에, 사업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
각 그 변경된 사실을 등기하여
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
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
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2
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

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한 경
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
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대한석
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
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
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u>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u>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u>	<u>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u>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u>
--	---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u> <u>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u> <u>②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u>	<u>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6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6조(이전등기) 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u>

다.

1.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
다.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영 제5조제1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 해당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영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u>제10조(관할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u>	-----. 1. ~ 3. (현행과 같음) <u>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①·② (생략) ③ 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사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사등의 소재지와 설치일을 등기할 것 2. 해당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제1호	제15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할 것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등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16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한 날

2. 새로운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공사가 지사등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종전의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와 이

제16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전한 날

2.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 제14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

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나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등

기의 신청서에 그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되었

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지사등

의 소재지에서도 그 변경된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공사는 제1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

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

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설립등기) ①·② (생략)	제26조(설립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u>③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한 후 3주일내에 그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삭 제></u>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①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공
<u>공사는 공사설립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u>	<u>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 2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u>	
<u>2.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u>	
<u>3.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국의</u>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다른 지역방송
국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역방
송국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
한다.

제28조(이전등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
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
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
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
에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역방송국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지역방송국의 구소재지에 있어
서는 2주일내에 당해 지역방송
국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
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

제28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
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
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2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2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법무법인의 등기) ① <u>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u>	제11조(법무법인의 등기) ① <u>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u> <u>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u> <u>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u> <u>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u>	<u>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6조(이전등기) ①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u>	<u>제6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u>

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등기소) ①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② (생략)

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관할등기소) ①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법 제107조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이하 “회장”이라 한다) 또는 사 업대표이사가 <u>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 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② (생략)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 ----- ----- <u>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 ⑩ (생략) ⑪ 제10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⑫ (생략)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⑫ (현행과 같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u>회장</u> <u>및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법 제64</u> <u>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u> <u>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내에</u> <u>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및 그 분</u> <u>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u> <u>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u> <u>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u> <u>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② (생략)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u>금고는</u> <u>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법</u> <u>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u> <u>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u> <u>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u> <u>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u> <u>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u> <u>이 지사등을 두었을 때에는 다</u> <u>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u> <u>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사 <u>등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u> <u>내에 해당 지사등의 소재지와</u> <u>설치일</u> 2. 신설된 지사등의 소재지: 지 <u>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u> <u>이내에 제6조제1호부터 제4호</u> <u>까지(다른 지사등의 소재지에</u> <u>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7</u> <u>호의 사항과 진흥원 원장의</u> <u>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u>	<u>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u> <u>은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u> <u>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설치된</u> <u>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u> <u>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8조(이전등기) ① 진흥원이 주된</u> <u>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u> <u>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u> <u>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1. 종전의 소재지: 새로운 소재 <u>지와 이전일</u> 2. 새로운 소재지: 제6조 각 호 <u>의 사항</u>	<u>제8조(이전등기) 진흥원은 주된 사</u> <u>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u> <u>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u> <u>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u> <u>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u> <u>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u> <u>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u> <u>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② 진흥원이 지사등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종전의 지사등의 소재지: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 제7조제2호의 사항

제9조(변경등기) ①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9조(변경등기) 진흥원은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u>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와 해당 지사무소(支事務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② (생략)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u>수협은행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수협은행의 등기사항) ① (생략) ② <u>수협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③ <u>수협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제29조의3(수협은행의 등기사항)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u>수협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일

2. 해당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④ 수협은행이 본점을 이전하였
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수협은행이 지점을 이전하였
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점과
종전의 지점 소재지에서는 새로
운 지점의 소재지와 이전한 날
을 등기하고, 새로운 지점의 소
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
이 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
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

④ 수협은행은 본점 또는 지점
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
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본점
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
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삭 제>

⑥ 수협은행은 제1항 각 호 또
는 제3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항의 이전등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
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

<u>9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 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 여야 한다.</u> ⑦ (생 략)	<u>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⑦ (현행과 같음)
--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7조(신설등기) ①기금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신설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 3. 삭제 <u>②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 새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u>	<u>제7조(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8조(이전등기) ①기금이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2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u> <u>②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u>	<u>제8조(이전등기) 기금은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u>

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 뜻을 등
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
주일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
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
일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지
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
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등기를
하면 된다.

제9조(변경등기) 제6조제2항 각호
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
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
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
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
도 3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
기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

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
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기금은 제6조제2
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
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
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제12조(등기소) ① 기금의 등기는 그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생략)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등기소) ① 기금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조</u> <u>합의 지사무소 또는 중앙회의</u> <u>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라 한</u> <u>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u> <u>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u> <u>기하여야 한다.</u> 1.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u> <u>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u> <u>재지와 설치연월일</u> 2. <u>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서는</u> <u>3주일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u> <u>· 제3호· 제7호의 사항과 지</u> <u>사무소등의 소재지 및 설치연</u> <u>월일</u> <u>제4조(변경등기 등) ① 제2조제1항</u> <u>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u> <u>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u> <u>는 2주일이내에 변경된 내용을</u> <u>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u> <u>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제</u> <u>3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u> <u>이 있는 때에는 지사무소등의</u> <u>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u>	<u>제3조(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u> <u>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u> <u>또는 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u> <u>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u> <u>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u> <u>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u> <u>소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u> <u>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4조(변경등기 등) ① 조합 또는</u> <u>중앙회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u> <u>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u> <u>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u> <u>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u> <u>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u> <u>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u> <u>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u> <u>일을 등기해야 한다.</u>

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 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소소재지에서는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 또는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분할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있는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해산등기

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은 법 제55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 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 등기를 해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
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무소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
주일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
표이사는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
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
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산인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경
우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
다.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공
제사업 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
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u> <u>이 지부·연수원·사업소 또는</u> <u>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u> <u>을 설치한 때에는 법 제49조제3</u> <u>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u> <u>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u> 1.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u> <u>2주일 내에 설치된 지부의 명</u> <u>칭과 소재지</u> 2. <u>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u> <u>에서는 3주일 내에 다음 각 목</u> <u>의 사항</u> 가. <u>목적</u> 나. <u>명칭</u> 다.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라. <u>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u> <u>번호 및 주소</u> 마. <u>공고의 방법</u>	<u>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u> <u>은 지부·연수원·사업소 또는</u> <u>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u> <u>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u> <u>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u> <u>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u> <u>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u> <u>야 한다.</u>
<u>제47조(이전등기) ① 공단이 주된</u> <u>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u> <u>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u> <u>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u> <u>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u>	<u>제47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u> <u>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u> <u>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u> <u>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u> <u>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u>

에서는 3주일 내에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48조(변경등기)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부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8조(변경등기) 공단은 법 제49조제2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4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4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전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이전등기)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舊)소재지에는 2주일 이내에 신(新)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각각 등기하고, 신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의2(지사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u> <u>2. 당해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u>	<u>제4조의2(지사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5조(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u> <u>②공사가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u>	<u>제5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에서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6조(변경등기)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2의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u>한 같다.</u> 1. ~ 3. (생 략) ②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① <u>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 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서 한다.</u> ② ~ ④ (생략)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① <u>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 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이전등기) ①울산과기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②울산과기원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3조(이전등기) 울산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4조(변경등기) 울산과기원은 제2조제2항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u>	<u>제4조(변경등기) 울산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u> <u>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u>	<u>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4조(이전등기)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u>	<u>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u>	<u>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u>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u> <u>공단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u> <u>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u> <u>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u>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u> <u>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u> <u>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주</u> <u>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u> <u>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공단</u> <u>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u> <u>설치한 경우의 분사무소 설치</u> <u>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u> <u>께 한다.</u> <u>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u> <u>재지 : 3주 이내에 제49조 각</u> <u>호의 사항</u> <u>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u> <u>재지 : 3주 이내에 새로 설치</u> <u>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u> <u>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u> <u>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u> <u>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u>	<u>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u> <u>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u> <u>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u> <u>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u> <u>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u> <u>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u> <u>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u> <u>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u> <u>야 한다.</u>

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제51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 신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9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립등기등) ① (생 략) <u>②조합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u> <u>에 의하여 조합의 지점 또는 출</u> <u>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u> <u>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u> <u>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1. <u>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u> <u>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u> <u>소재지</u> 2. <u>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u> <u>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부터</u> <u>제3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u> <u>호까지의 사항</u> 3. <u>삭제</u> <u>③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u> <u>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u> <u>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1. <u>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u> <u>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u> <u>주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와 모</u> <u>든 지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u> <u>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새 소</u>	제5조(설립등기등) ① (현행과 같 음) <u>②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u> <u>라 조합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u> <u>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u> <u>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u> <u>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u> <u>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u> <u>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③ 조합은 주사무소나 지점을</u> <u>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u> <u>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주사</u> <u>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u> <u>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u> <u>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u> <u>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재지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지점의 종전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새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3. 주사무소를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모든 지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한 뜻

4.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그 지점의 소재지에 있어서 그 이전한 뜻

④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변경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④ 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및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조합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해임한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소) ①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생략)

-----.

⑤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①조합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등기소) ① 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가 주 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 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 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 어서는 같은 기간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 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 여야 한다.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 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 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 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 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 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 을 등기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u>법 제24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② <u>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u>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u>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u>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u>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등기) ① <u>중소기업은행장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u>	제2조(설립등기) ① <u>중소기업은행장은 법률 제641호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신설등기) <u>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제3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u>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1. <u>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u>	
2. <u>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u>	
제4조(이전등기) ① <u>중소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u>	제4조(이전등기) <u>중소기업은행은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u>

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 내에 본점과 구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u>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제9조(등기소) ① <u>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u> ②·③ (생략)	<u>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등기소) ① <u>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대리인의 등기) ①중양회 회장이 법 제106조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 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중양 회·지회 또는 지소의 소재지에 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 여야 한다.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6조(대리인의 등기) ①중양회 는 중양회 회장이 법 제106조제 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 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중양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 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①공사가 지사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설치등기를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제51조(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	제51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

9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기) 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3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2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7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기)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63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①지방의료원이 분원을 설치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 새로이 분원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지방의료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분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제4조(이전등기)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u>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만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u>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5조(변경등기) 지방의료원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지점의 설치등기) ① 재단의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을 설치한 사실 2. 신설된 지점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 ②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설치의 사실만을 등기한다.	제9조(지점의 설치등기) 재단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이전등기) ① 재단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8조제1호부터 제3	제10조(이전등기) 재단은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사실만을 등기한다.

제11조(변경등기) ① 제8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재단의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점 및 대리인들 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제11조(변경등기) 재단은 제8조 각 호 또는 제9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재단은 재단의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3조(지부설치의 등기) ①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7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②협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그	제73조(지부의 설치등기)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등기를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74조(이전등기) ①협회 또는 지부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주소지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제7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75조(변경등기) 제7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이전등기) 협회는 주된 사무소나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5조(변경등기) 협회는 제72조 각 호 또는 제7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①공사가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3. 삭제 ② 삭제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	제8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야 한다.

② 삭제

제9조(변경등기) 제6조 각호의 사
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
주일이내에 변경동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
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
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
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삭 제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
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
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
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
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9조
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
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u>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u> <u>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u> <u>다.</u>	<u>뜻을 등기해야 한다.</u>
--	--------------------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 각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 ----- ----- -----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u>구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u>이전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② 과학기술원이 분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원의 구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원의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u>	

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있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는 공사의 설립 후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를 새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면 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10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단이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등기해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u> <u>2.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u> <u>3. 이미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이미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이미 설치된 지사등의</u>	<u>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등기해야 한다.

1.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
2.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지사등을 이전한 경우는 그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

제4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및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u>2.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일 이내</u> <u>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u> <u>공단의 사장이 「한국광해광업</u> <u>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u> <u>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u> <u>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u> <u>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u> <u>등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u> <u>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u> <u>같다.</u> 1. ~ 3. (생략) <u>② 공단의 사장은 법 제7조에</u> <u>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u> <u>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u> <u>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u> <u>등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u> <u>을 등기해야 한다.</u>	<u>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u> <u>공단은 공단의 사장이 「한국광</u> <u>해광업공단법」(이하 “법”이라</u> <u>한다)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u> <u>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u> <u>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u> <u>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u> <u>야 한다. -----</u> <u>-----</u> <u>-----.</u> 1. ~ 3. (현행과 같음) <u>② 공단의 사장이 법 제7조에</u> <u>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u> <u>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u>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u> <u>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u>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이전등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u>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u>이전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u>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u>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u>2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u>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u>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② <u>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u>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u>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제5조(이전등기) ① <u>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② <u>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u>	제5조(이전등기) <u>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
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
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
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
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
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
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
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는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

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

제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해

<u>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u> <u>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u> <u>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u> <u>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u> <u>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u> <u>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u> <u>한다.</u>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u> <u>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u> <u>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u> <u>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1.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u> <u>우: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u> <u>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u> <u>설치 연월일</u> 2. <u>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u> <u>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u> <u>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u> <u>지, 제6호(대표권이 있는 임원</u> <u>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호</u> <u>의 사항</u> 3. <u>이미 설치된 다른 분사무소의</u> <u>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u> <u>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u> <u>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u> <u>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u> <u>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u> <u>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u> <u>치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u> <u>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u>	<u>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u> <u>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u> <u>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u> <u>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u> <u>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u> <u>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등기한다.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새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옛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 호의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제5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u>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해당 변경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제8조(관할 등기소) ① <u>공사의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그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u> ② (생략)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u>법 제9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② <u>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제8조(관할 등기소) ① <u>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u>공사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u>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u>
--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제7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종전 소재지 또는 새로운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

중전의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등기) ①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사 또는 사무소(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만 해당한다)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

기해야 한다.

제8조(변경등기) 공사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

<u>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② <u>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11조(관할 등기소) 이 영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같은 법원의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u>	<u>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u> -----. 1. ~ 3. (현행과 같음) ② <u>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u> <u>제11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2.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할 것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등기한다.	제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이전한 지부등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이전한 지부등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제4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종전 소재지 또는 새로운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u>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만을 등기한다.</u> <u>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및 지부등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u>	<u>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u>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② <u>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u>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① <u>마사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3주일 이내에</u>	제16조(이전등기) 마사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영 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마사회는 마사회 회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이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해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u> <u>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과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u>	<u>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7조(이전등기) ① 부동산원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해야 한다.</u> <u>1. 종전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u> <u>2. 새로운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 각 호의 사항</u>	<u>제7조(이전등기) 부동산원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종전 소재지 또는 새로운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②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해야 한다.

1. 종전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

2. 새로운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만 등기한다.

제8조(변경등기) 제5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부동산원의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

제8조(변경등기) 부동산원은 제5조 각 호 또는 제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
----- 선
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
소-----

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u>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u> <u>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u> <u>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u> <u>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u> <u>하여야 한다.</u> <u>제12조(관할 등기소) 이 영에 따</u> <u>른 등기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u> <u>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u> <u>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같은 법</u> <u>원의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u> <u>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u> <u>다.</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u> <u>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u> <u>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u> <u>실을 등기해야 한다.</u> <u>제12조(관할 등기소) 부동산원의</u> <u>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u> <u>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u> <u>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u> <u>공단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u> <u>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u> <u>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u>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u> <u>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u> 1.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u> <u>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u> <u>소의 명칭과 소재지</u> 2. <u>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u> <u>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u> <u>제2항 각 호의 사항</u> 3. <u>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u> <u>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새로</u> <u>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u> <u>재지</u> ② <u>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u> <u>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u> <u>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u> <u>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u> <u>로운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u> <u>만을 등기한다.</u> <u>제4조(이전등기) ①</u> <u>공단은 주된</u>	<u>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u> <u>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u> <u>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u> <u>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u> <u>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u> <u>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u> <u>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u> <u>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u> <u>야 한다.</u> <u>제4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u>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
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
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
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
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
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
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소재
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된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
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
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
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내
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등기) ①·② (생략) 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조(신설등기) 한국산업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일 2. 해당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제3조(지점의 설치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제4조(이전등기) 한국산업은행은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

서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이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점과 종전의 지점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지점의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은 회장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2. (생략) 제8조(등기소) ① <u>한국산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u> ② (생략)	<u>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u> -----. 1.·2. (현행과 같음) 제8조(등기소) ① <u>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② (현행과 같음)
--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u>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u> 1.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u> 2. <u>새로 설치한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u> 3. <u>기존의 분사무소의 소재지: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u>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u>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u>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u>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u>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한 지사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한 지사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u>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u>	<u>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u>
---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 및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

제5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

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한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관할 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에 대해서는 그 주된 사무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관할 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u>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u> ② (생 략)	<u>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② (현행과 같음)
--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신설등기) ①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2. 해당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제2호의 지점·출장소 외의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② 본점·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을 등기하면 된다.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수출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제4조(이전등기) 수출입은행은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이전한 후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제9조(등기소) ① <u>수출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이나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u> ②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등기소) ① <u>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② (현행과 같음)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이전등기)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3조(이전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신설등기) 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제3조(설치등기) 한국은행은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한국은행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①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관할등기소) ①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생략) 제8조(대리인의 선임) ①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한국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조(변경등기) 한국은행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관할등기소) ① 한국은행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대리인의 선임)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가 「한국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신설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른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6호의 사항과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1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옛 소재지
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4주
일 이내에 제10조제2호의 사항
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등기)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
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
의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
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등기
하여야 한다.

1. 2. (생략)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
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
해야 한다.

제12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12
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
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변경사항을 등기
해야 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
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23
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
한다)을 선임한 경우
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등기
해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리인의 등기) ① <u>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② (생략)	제3조(대리인의 등기) ① <u>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의 이사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한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해당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	--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①공사가 조폐창·사무소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하부기관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 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을 다른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을 이전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u>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u> <u>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u> <u>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u>	<u>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u> <u>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u> <u>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u>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u>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u>	제6조(설립등기) ① ----- ----- ----- <u>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주 이내에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제8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6조제2	제8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만을 등기한다.

제9조(변경등기)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① <u>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登記하여야 한다.登記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u> 1.·2. (생략) ② (생략)	제10조(대리인의 선임) ① <u>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登記해야 한다.登記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가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
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
직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
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여
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하부조직의 소재
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변경
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대행인의 선임등기)
①공사의 사장이 법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사장에 갈음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
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
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
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
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대리·대행인을 해임한 때에
는 2주일 이내에 대리·대행인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
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
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대행인의 선임등기)
①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7
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
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
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
원(이하 “대리·대행인”이라 한
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리·대행인을 해임한 경우
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

<u>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u>	<u>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u>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u>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u> <u>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u> <u>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u> <u>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u>	<u>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u> <u>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u>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7조

<u>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u> 1. ~ 3. (생략) <u>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u> <u>제8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u>	<u>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u>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u> <u>제8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u>
---	--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리인의 선임) ① <u>사장이</u> <u>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u> <u>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u> <u>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u> <u>출장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u> <u>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u> <u>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u> <u>된 때에도 또한 같다.</u> 1.·2. (생략) ② (생략)	제9조(대리인의 선임) ① <u>공사는</u> <u>사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u> <u>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u> <u>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u> <u>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u> <u>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u> <u>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u>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u>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해양과기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u>그 이전한 사실을</u>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해양과기원은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이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u>그 이전한 사실을</u> 등기하고, 부설기관 또는 분원	

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해양과기원이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며,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등을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기존에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및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등을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사업소·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

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등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지사등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및 이전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할 것 2.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등기할 것 2.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

항을 등기할 것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할 것

2.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의 사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 이

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u>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u> 1. · 2. (생략)	<u>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2. (현행과 같음)
---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지사등의 설치등기) 지 원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당 사항을 등 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사 등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 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사등의 명칭 나. 지사등의 소재지와 설치 일 2.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 지 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9조의2제1호, 제2호, 제5호(다른 지사등의 소재 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 다) 및 제6호의 사항 나. 지원공사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29조의4(이전등기) ① 지원공사 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제29조의3(지사 등의 설치등기) 지 원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 다. 제29조의4(이전등기) 지원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登記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소재지: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소재지: 제29조의2 각 호의 사항

② 지원공사가 지사등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登記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종전의 지사등의 소재지: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 제29조의3제2호 각 목의 사항

제29조의5(변경등기) ① 지원공사가 제2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登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공사가 제29조의3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登記하여야

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말한다)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登記해야 한다.

제29조의5(변경등기) 지원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 또는 제29조의3의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제29조의4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登記해야 한다.

<u>한다.</u> 제29조의10(대리인의 선임) ① <u>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략) ② (생략)	제29조의10(대리인의 선임) ① <u>지원공사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u>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15 - 2571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61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연 락 처	(044) 202 - 4833
법무부 법무심의관	
연 락 처	(02) 2110 - 3164
국방부 규제개혁법제과	
연 락 처	(02) 202 - 4833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1482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64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5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1365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48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396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7069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3235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5163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4 - 7358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2204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연 락 처	(042) 481 - 4155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2110 - 1324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2804